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청년과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사 등 국가자격시험에 응시하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른 청년 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대하여 응시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응시자의 사고 또는 질병으로 인한 입원 등의 사유로 국가자격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응시수수료를 반환해 주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등 14개 법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기획재정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법령별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4. . . ~ . .)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부령 제 호

국가자격시험 응시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1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총리령·부령안

제1조(「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의 개정)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험관리기관의 장은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받은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1.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2. 시험관리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3. 시험일 5일 전까지 응시원서의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4. 본인의 사고 또는 질병으로 입원(시험일이 입원기간에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진찰·치료·입원 또는 격리 처분(시험일이 진찰·치료·입원 또는 격리 기간에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받아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6. 본인의 배우자나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 등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이 시험일 7일 전부터 시험일까지의

기간에 사망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제2조(「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에 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사고 또는 질병으로 입원(시험일이 입원기간에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수수료 전부
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치료·입원 또는 격리 처분(시험일이 치료·입원 또는 격리 기간에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받아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수수료 전부
8. 본인의 배우자나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조부모·외조부모·형제자매·자녀가 시험일 7일 전부터 시험일까지의 기간에 사망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수수료 전부

제3조(「건축사법 시행규칙」의 개정) 건축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은 응시원서 접수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0조제1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3.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제10조제2항제6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사고 또는 질병으로 입원(시험일이 입원기간에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수수료 전부
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진찰·치료·입원 또는 격리 처분(시험일이 진찰·치료·입원 또는 격리 기간에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받아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수수료 전부
8. 본인의 배우자나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조부모·외조부모·형제자매·자녀가 시험일 7일 전부터 시험일까지의 기간에 사망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수수료 전부

제4조(「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의 개정)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에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사고 또는 질병으로 입원(시험일이 입원기간에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수수료 전부
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진찰·치료·입원 또는 격리 처분(시험일이 진찰·치료·입원 또는 격리 기간에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받아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

부한 수수료 전부

7. 본인의 배우자나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조부모·외조부모·
형제자매·자녀가 시험일 7일 전부터 시험일까지의 기간에 사망
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수수료 전부

제5조(「보험업법 시행규칙」의 개정) 보험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금융감독원장은 응시원서 접수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시험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49조제2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3.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제49조제3항 중 “시험 전날까지 응시 의사를 철회하는”을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시험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2. 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3. 시험 전날까지 응시 의사를 철회하는 경우
4. 사고 또는 질병으로 입원(시험일이 입원기간에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진찰·치료·입
원 또는 격리 처분(시험일이 진찰·치료·입원 또는 격리 기간에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받아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6. 본인의 배우자나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조부모·외조부모·
형제자매·자녀가 시험일 7일 전부터 시험일까지의 기간에 사망
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제6조(「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의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6조제3항에 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사고 또는 질병으로 입원(시험일이 입원기간에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치료·입원 또는
격리 처분(시험일이 치료·입원 또는 격리 기간에 포함되는 경우
로 한정한다)을 받아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8. 본인의 배우자나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조부모·외조부모·
형제자매·자녀가 시험일 7일 전부터 시험일까지의 기간에 사망
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제7조(「수도법 시행규칙」의 개정)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항에 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사고 또는 질병으로 입원(시험일이 입원기간에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수수료 전부

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치료·입원 또는

격리 처분(시험일이 치료·입원 또는 격리 기간에 포함되는 경우

로 한정한다)을 받아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수수료

전부

8. 본인의 배우자나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조부모·외조부모·

형제자매·자녀가 시험일 7일 전부터 시험일까지의 기간에 사망

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수수료 전부

제8조(「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수

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제12조의9제2항제4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부터 제6호까

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사고 또는 질병으로 입원(시험일이 입원기간에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진찰·치료·입

원 또는 격리 처분(시험일이 진찰·치료·입원 또는 격리 기간에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받아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6. 본인의 배우자나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조부모·외조부모·

형제자매·자녀가 시험일 7일 전부터 시험일까지의 기간에 사망

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제9조(「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응급의료에 관한 법

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험관리기관의 장은 응급구조사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수수료

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1.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2. 시험관리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3. 시험일 5일 전까지 응시원서의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4. 본인의 사고 또는 질병으로 입원(시험일이 입원기간에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진찰·치료·입

원 또는 격리 처분(시험일이 진찰·치료·입원 또는 격리 기간에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받아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6. 본인의 배우자나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 등 가족(「민법」 제

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이 시험일 7일 전부터 시험일까지의

기간에 사망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제10조(「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은 국가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1.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2. 국가시험관리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3. 시험일 5일 전까지 응시원서의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4. 본인의 사고 또는 질병으로 입원(시험일이 입원기간에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진찰·치료·입원 또는 격리 처분(시험일이 진찰·치료·입원 또는 격리 기간에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받아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6. 본인의 배우자나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 등 가족(「민법」 제 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이 시험일 7일 전부터 시험일까지의 기간에 사망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제11조(「의료법 시행규칙」의 개정)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국가시험등관리기관의 장은 국가시험등에 응시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1.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2. 국가시험등관리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3. 시험일 5일 전까지 응시원서의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4. 본인의 사고 또는 질병으로 입원(시험일이 입원기간에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진찰·치료·입원 또는 격리 처분(시험일이 진찰·치료·입원 또는 격리 기간에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받아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6. 본인의 배우자나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 등 가족(「민법」 제 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이 시험일 7일 전부터 시험일까지의 기간에 사망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제12조(「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의 개정)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자격시험관리기관의 장은 응시원서 접수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9조제4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3.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4.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

제13조(「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환경 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응시 수수료를 수납한 기관의 장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응시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3.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4.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

제30조제6항(종전의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사고 또는 질병으로 입원(시험일이 입원기간에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진찰·치료·입원 또는 격리 처분(시험일이 진찰·치료·입원 또는 격리 기간에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받아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7. 본인의 배우자나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조부모·외조부모·형제자매·자녀가 시험일 7일 전부터 시험일까지의 기간에 사망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제14조(「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의 개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자격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응시원서 접수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31조제3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3.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4.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

제31조제4항에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사고 또는 질병으로 입원(시험일이 입원기간에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수수료의 100분의 50
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진찰·치료·입원 또는 격리 처분(시험일이 진찰·치료·입원 또는 격리 기간에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받아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

부한 수수료의 100분의 50

7. 본인의 배우자나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조부모·외조부모·
형제자매·자녀가 시험일 7일 전부터 시험일까지의 기간에 사망
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수수료의 100분의 50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 개정
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응시수수료 등의 감면 및 반환에 관한 적용례) ① 제3조부터 제5
조까지, 제8조, 제12조 및 제14조까지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본문
에 따른 시행일 이후 공고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 ② 제13조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공고하
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조(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의 응 시원서 등) ① ~ ③ (생략)	제6조(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의 응 시원서 등) ① ~ ③ (현행과 같 음)
<신설>	④ 시험관리기관의 장은 간호조 무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려는 자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 라 받은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 부를 반환해야 한다.
	1.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2. 시험관리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3. 시험일 5일 전까지 응시원서 의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4. 본인의 사고 또는 질병으로 입원(시험일이 입원기간에 포 합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진찰·치 료·입원 또는 격리 처분(시 험일이 진찰·치료·입원 또 는 격리 기간에 포함되는 경

우로 한정한다)을 받아 시험
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6. 본인의 배우자나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 등 가족(「민
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이 시험일 7일 전부터
시험일까지의 기간에 사망하
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
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8조(응시원서 및 수수료 등) ① · ② (생략) ③ 영 제13조제3항에 따른 응시 수수료의 반환 사유 및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5. (생략) <신설>	제8조(응시원서 및 수수료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1. ~ 5. (현행과 같음) 6. 사고 또는 질병으로 입원(시 험일이 입원기간에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수수료 전부 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치료·입 원 또는 격리 처분(시험일이 치료·입원 또는 격리 기간에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받아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수수료 전부 8. 본인의 배우자나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조부모·외조 부모·형제자매·자녀가 시험
<신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3조(검정수수료) ① (생략)	제13조(검정수수료) ① (현행과 같음)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검정 수수료를 납부한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검정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② ----- ----- ----- -----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신설>	5. 사고 또는 질병으로 입원(시험일이 입원기간에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수수료 전부
<신설>	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진찰·치료·입원 또는 격리 처분(시험일이 진찰·치료·입원 또는 격리 기간에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받아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수수료 전부
<신설>	7. 본인의 배우자나 본인 또는

<신설>	경우로 한정한다)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수수료 전부
<신설>	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진찰·치료·입원 또는 격리 처분(시험일이 진찰·치료·입원 또는 격리 기간에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받아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수수료 전부
6. (생략)	8. 본인의 배우자나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조부모·외조부모·형제자매·자녀가 시험일 7일 전부터 시험일까지의 기간에 사망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수수료 전부
③·④ (생략)	9. (현행 제6호와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26조(응시원서의 제출 등) ① · ② (생략) ③ 한국산업인력공단은 법 제16 6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응시수 수료를 낸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응시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 환해야 한다. 1. ~ 5. (생략) <u><신 설></u>	제226조(응시원서의 제출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 -----. 1. ~ 5. (현행과 같음) 6. 사고 또는 질병으로 입원(시 험일이 입원기간에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치료·입 원 또는 격리 처분(시험일이 치료·입원 또는 격리 기간에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받아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u><신 설></u>	

<u><신 설></u>	2. 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u><신 설></u>	3. 시험 전날까지 응시 의사를 철회하는 경우
<u><신 설></u>	4. 사고 또는 질병으로 입원(시 험일이 입원기간에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u><신 설></u>	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진찰·치 료·입원 또는 격리 처분(시 험일이 진찰·치료·입원 또 는 격리 기간에 포함되는 경 우로 한정한다)을 받아 시험 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u><신 설></u>	6. 본인의 배우자나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조부모·외조 부모·형제자매·자녀가 시험 일 7일 전부터 시험일까지의 기간에 사망하여 시험에 응시 하지 못한 경우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4조(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 시험의 시행공고 등) ① ~ ③ (생략)	제14조(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 시험의 시행공고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응시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주어야 한다.	④ ----- ----- ----- ----- -----.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u><신 설></u>	6. 사고 또는 질병으로 입원(시험일이 입원기간에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수수료 전부
<u><신 설></u>	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치료·입원 또는 격리 처분(시험일이 치료·입원 또는 격리 기간에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받아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수수료 전부

<u><신 설></u>	8. 본인의 배우자나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조부모·외조부모·형제자매·자녀가 시험일 7일 전부터 시험일까지의 기간에 사망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생 략)	8. 본인의 배우자나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조부모·외조부모·형제자매·자녀가 시험일 7일 전부터 시험일까지의 기간에 사망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수수료 전부 ⑤ (현행과 같음)
-----------------------------------	--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2조의9(자격시험 수수료) ① (생 략) ② 해양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전부를 그 수수료를 납부한 사람에게 환불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제12조의9(자격시험 수수료)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1. ~ 3. (현행과 같음) 4. 사고 또는 질병으로 입원(시험일이 입원기간에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진찰·치료·입원 또는 격리 처분(시험일이 진찰·치료·입원 또는 격리 기간에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받아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6. 본인의 배우자나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조부모·외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8조(응급구조사시험의 응시 및 수수료) ①·② (생략) <u><신설></u>	제28조(응급구조사시험의 응시 및 수수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시험관리기관의 장은 응급구조사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1.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2. 시험관리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3. 시험일 5일 전까지 응시원서의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4. 본인의 사고 또는 질병으로 입원(시험일이 입원기간에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진찰·치료·입원 또는 격리 처분(시험일이 진찰·치료·입원 또는 격리 기간에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받아 시험

4. (생략)	<u>부모·형제자매·자녀가 시험일 7일 전부터 시험일까지의 기간에 사망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u> 7. (현행 제4호와 같음)
---------	---

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6. 본인의 배우자나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 등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이 시험일 7일 전부터 시험일까지의 기간에 사망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5조(수수료 등) ①·② (생략) <u><신 설></u>	제25조(수수료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은 국가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1.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2. 국가시험관리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3. 시험일 5일 전까지 응시원서의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4. 본인의 사고 또는 질병으로 입원(시험일이 입원기간에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진찰·치료·입원 또는 시험일이 진찰·치료·입원 또

는 격리 기간에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받아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6. 본인의 배우자나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 등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이 시험일 7일 전부터 시험일까지의 기간에 사망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조(수수료 등) ① ~ ⑤ (생략) <신 설>	제7조(수수료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국가시험등관리기관의 장은 국가시험등에 응시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1.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2. 국가시험등관리기관의 귀책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3. 시험일 5일 전까지 응시원서의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4. 본인의 사고 또는 질병으로 입원(시험일이 입원기간에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진찰·치료·입원 또는 격리 처분(시험일이 진찰·치료·입원 또

는 격리 기간에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받아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6. 본인의 배우자나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 등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이 시험일 7일 전부터 시험일까지의 기간에 사망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9조(자격시험의 응시자격 및 응시절차) ① ~ ③ (생략)	제9조(자격시험의 응시자격 및 응시절차)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는 자격시험관리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 응시수수료를 내야 한다.	④ ----- ----- ----- -----.
<단서 신설>	다만, 자격시험관리기관의 장은 응시원서 접수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신설>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신설>	3.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신설>	4.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
⑤ (생략)	⑤ (현행과 같음)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0조(수수료) ① ~ ③ (생략)	제30조(수수료)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설>	④ 제3항에 따라 응시 수수료를 수납한 기관의 장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응시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3.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4.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
④ (생략)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수수료를 수납한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 ----- -----

분에 따라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신설>	5. 사고 또는 질병으로 입원(시험일이 입원기간에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신설>	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진찰·치료·입원 또는 격리 처분(시험일이 진찰·치료·입원 또는 격리 기간에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받아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신설>	7. 본인의 배우자나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조부모·외조부모·형제자매·자녀가 시험일 7일 전부터 시험일까지의 기간에 사망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1조(자격시험의 시행공고 등)		제31조(자격시험의 시행공고 등)		
①·② (생략)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라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의 응시수수료를 자격시험 실시기관의 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③ ----- ----- ----- ----- ----- ----- 다만, 자격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응시원서 접수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신설>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신설>		3.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신설>		4.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		
④ 자격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응시 수수료를 납		④ ----- -----		

<신 설>

7. 본인의 배우자나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 · 조부모 · 외조부모 · 형제자매 · 자녀가 시험일 7일 전부터 시험일까지의 기간에 사망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수수료의 100분의 50